

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시민교육지원과

제정 2007· 9· 18 규칙 제362호
개정 2010· 12· 30 규칙 제437호
일부개정 2014· 10· 15 규칙 제529호
일부개정 2017· 4· 7 규칙 제597호
일부개정 2023· 9· 8 규칙 제755호
(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아·통장 임명에 관한
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· 4· 7>

제2조(운영사무) ① 읍·면·동장은 「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학습센터(이하 “자치학습센터”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사무내용을 명확히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,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분담 대장에 사무분장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읍·면·동장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이용 현황, 프로그램운영 현황,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학습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.

제3조(시설의 이용제한) 읍·면·동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7· 4· 7, 2023· 9· 8>

1. 삭제 <2010· 12· 30>
2. 술에 만취된 사람
3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
4. 화재위험, 악취,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5. 그 밖에 안전유지상 이용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4조(시설 장비 안전관리) 읍·면·동장은 읍·면·동 주민자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

라 한다)와 공동으로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분기별 1회 및 수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, 하자 발생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.

제5조(변상조치) ① 읍·면·동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·장비 및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·4·7>

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기준은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. <개정 2017·4·7>

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이천시 세외수입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·4·7>

제6조(안전수칙) ① 읍·면·동장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별·프로그램별로 이용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정해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.

1.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오로 발생한 화재사고
2.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오로 인한 본인 및 다른 이용자의 신체·정신상의 발생한 피해사고
3. 어린이를 동반하여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
4. 그 밖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

제7조(수강신청 등) ① 자치학습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·4·7>

② 유료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, 위원회는 수강료 납부영수증과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서식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 <개정 2017·4·7>

제8조(수강료 징수범위)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수강료는 프로그램별 월 30,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주당 5시간 이상이고 2개월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

읍·면·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. <개정 2017·4·7>

제9조(수강료의 수입)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·4·7>

② 수강료는 수입이 있는 날 위원장 또는 위원회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외 수입은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다음날로 한다.

제10조(수강료의 반환처리) ① 위원장은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수강을 신청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·4·7>

1. 모집정원 미달 등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
제11조(수강료의 사용용도 등)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치학습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 <개정 2017·4·7>

1.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수당
2. 자치학습센터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
3. 신규프로그램개발 및 개선방안 비용
4.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·집기 구입비
5. 자치학습센터 시설의 보강·보수비
6. 자치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
7. 위원회운영 및 활성화 경비
8.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비로 위원회가 읍·면·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.

② 수강료 수입금의 지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

③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.

제12조(결산 및 공고) ① 위원회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잔액증명을 첨부하여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및 기타 수입과 지출내용은 반기별로 결산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읍·면·동 게시판에 게시·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·4·7>

제13조(수당 및 실비보상)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2호의 지급 범위는 프로그램운영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7·4·7>

1. 자원봉사자 급식비
2.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

제14조(위원등의 위·해촉) ① 읍·면·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·4·7>

② 읍·면·동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·4·7>

③ 읍·면·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·해촉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(고문)위·해촉 대장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5조(위원 등의 신상공개) 읍·면·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위원 및 고문의 신상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7·4·7>

제16조(위원 등의 임기)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임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7·4·7>

제17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7·4·7>

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읍·면·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

다.

제18조(운영세칙) 조례 제25조에 따라 읍·면·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먼저 주민자치학습센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·4·7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·12·30 규칙 제43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·10·15 규칙 제52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·4·7 규칙 제59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9·8 규칙 제755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·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신설 2017·4·7>

수강료 반환 기준
(제10조 제2항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제10조제2항제1호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	수강을 할 수 없거나, 수강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10조제2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	가.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	수강시작일 전	이미 낸 수강료 전액
		총수강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	이미 낸 수강료의 2/3 해당액
		총수강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	이미 낸 수강료의 1/2 해당액
		총수강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
	나.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수강시작일 전	이미 낸 수강료 전액
		수강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		총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	

[별지 제1호서식] (제2조제1항 관련)

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사무분담대장

구 분	성 명	생년월일	분담사무	분 담 기 간		1일 근무시간	비 고
				부 터	까 지		
	단체의 경우 대표자		세부업무				

<작성요령> 1) 구분 : 공무원,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자, 학습동아리등 대표자 직책
 2) 1일근무시간 :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, 학습동아리에 한하여 기재

[별지 제2호서식] (제2조제2항 관련)

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일지

년 월 일

담당자	담 당	읍면동장	결 재

1. 시설이용현황

시설명	이용시설	이용인원	비 고

2. 프로그램운영현황

프로그램명	운영시간	신청인원	참석인원	강사명	비 고

3. 자원봉사 활동

가. 참여인원

계	주민자치위원	자원봉사	학습동아리	기 타	비 고

나. 참여자 명단

구 분	성명	참여시간	활동내용	비고
주민자치위원		: ~ :		
		: ~ :		
자 원 봉 사 자		: ~ :		
		: ~ :		
학 습 동 아 리		: ~ :		
		: ~ :		
기 타		: ~ :		
		: ~ :		

4. 기타(회의개최, 행사등)

--

[별지 제3호서식] (제7조 관련) <개정 2014. 10. 15>

수 강 신 청 서

프로그램명			
성 명		생 년 월 일	
주 소		연 락 처	
수 강 기 간	년 월 일 ~ 월 일	연 락 처	
수 강 료			
감면대상여부		감 면 사 유	
<p>000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 000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서명)</p>			
<p>《안전수칙》</p> <p>가.</p> <p>나.</p> <p>다.</p> <p>「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제2항에 의한 선량한 이용자로써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 시 귀 읍면동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.</p> <p>00읍면동장 귀하</p>			

[별지 제4호서식] (제9조제1항 관련) <개정 2014·10·15>

수 입 결 의 서

년도	간사(총무)	부위원장	위원장	협 조	담당자	읍면동장
발 의	년 월 일					(인)
수 입 일	년 월 일					(인)
정수부기재	년 월 일					(인)
수입금액	일금 원					
수입내역	프로그램명	납 부 자		금 액		
		주 소	성 명			

- <작성요령> 1) 납부자가 다수일 경우 수입내역 별지작성
 2) 프로그램별 작성

[별지 제5호서식] (제9조제1항 관련)

징 수 부

년월일	적요	예산액	징수결정액		수납액		과오납반환액		불납결손액		미수납액
		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

[별지 제8호서식] (제11조제3항 관련)

현 금 출 납 부

년월일	적 요	채 주	수입액	지출액	잔 액

[별지 제9호서식] (제12조제1항 관련)

200 년도 월 수입·지출 계산서

받음 : 000읍면동장

프로그램	수입			지출			집행잔액	비고
	전월	금월	누계	전월	금월	누계		

0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

- 주) 수입 및 지출은 프로그램별로 작성
- 불부합의 내용은 비고란에 기재
- 잔액증명첨부 간인(지출원 등록도장)

[별지 제10호서식] (제12조제2항 관련)

주민자치센터 수입·지출내역 공고

「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000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의 0000년도(상·하)반기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년 월 일

0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인

수 입		지 출		비 고
내 용	금 액	내 용	금 액	
잔 액				

[별지 제11호서식] (제14조제1항 관련)

제 호

위 축 장

주소

성명

귀하를 「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제2항 및 동조 제5항의
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0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(주민자치위원회 고문)으로 위촉합니
다.

년 월 일

000읍 면 동 장

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12호서식] (제14조제2항 관련)

해 측 통 보 서

000 귀하

「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이천시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(주민자치위원회고문)에서 해촉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000읍 면 동 장(인)

[별지 제13호서식] (제14조제3항 관련) <개정 2014·10·15>

주민자치위원회 위원(고문) 위·해촉 대장

위·해촉 번호	구분	위촉 년월일	성명	생년월일	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	직업	종사분야	해촉 년월일	해촉사유	비고

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14호서식] (제15조 관련)

000읍면동 공고 제 호

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신상 공고

「이천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0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신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직 위	성 명	연 령	성 별	직 업	위촉년월일

- 〈작성요령〉 1. 직위 : 고문,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, 위원등으로 기재
2. 직업 : 직장명과 직위기재

[별지 제15호서식] (제17조제1항 관련)

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		부위원장		위원장		결 재
작성자		간사 (인)				
회의구분		정기회(), 임시회()		회의주재자		
일시	년 월 일(요일) : ~ :					
장소	참석인원		위원	고문	기타	
			명	명	명	
부의안건	0 0 0					
회의결과	0 0 0					
토론사항	0 0 0					
기 타						
첨부서류	0 부의안건 목록 0 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0 토론관련 발언록 0 참석자 서명부					

[별지 제16호서식] (제17조제2항 관련)

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통보서

받음 : 000읍면동장

보냄 : 000주민자치위원장 (인)

0000년 00월중 주민자치위원회(정례회의, 임시회의)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1. 회의개요

개최일시	년 월 일(요일) : ~ :			
개최장소				
참석인원	위 원	명중 명	고 문	명중 명

2. 회의결과

구 분	건 명	결과 또는 내용	비 고
의결(안)처리			
심의(안)처리			
토 론 내 용	처리에 결정적인 토론내용 기재		
건의 사항	안전처리 관련 또는 기타위원회의 건의사항		